

소방방재청고시제 2006-25 호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 방 방 재 청 장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
非常放送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202)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基準は、警報設備である非常放送設備の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적용범위) “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률시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第 2 条(適用範圍)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9 条第 1 項および同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別表 4 警報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2 号の規定による非常放送設備は、この基準で定める規定により設備を設置して、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 3 条(定義) この基準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확성기”라 함은 소리를 크게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1. “拡声器”とは、声を大きくして遠くまで伝えられるようにする装置で、別名スピーカーをいう。
2. “음량조절기”라 함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音量調節器”とは、可変抵抗を利用して電流を変化させて音量を大きくしたり小さく調節できる装置をいう。
3. “증폭기”라 함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하는 장치를 말한다.
3. “増幅器”とは、電圧電流の振幅を増やして感度を良くして微弱な音声電流を大きな音声電流で変化させて声を大きくする装置をいう。

제 4 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第 4 条(音響装置) 非常放送設備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エレベーター内部には、別途の音響装置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1. スピーカーの音声入力は、3W(室内に設置するものにおいては1W)以上であること。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スピーカーは、各階ごとに設置するものの、その階の各部分から一つのスピーカーまでの水平距離が25m以下となるようにして、当該階の各部分に有効に警報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設置すること。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3. 音量調節器を設置する場合、音量調節器の配線は3線式とすること。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操作部の操作スイッチは、床から0.8m以上1.5m以下の高さに設置すること。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操作部は、起動装置の作動と連動して、当該起動装置が作動した階または区域を表示できることとすること。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6. 増幅器および操作部は、守衛室など常時の人が勤める場所として、点検が便利で防火上有効なところに設置すること。
7.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7. 5階(地階は除く。)以上の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おいては、2階以上の階から出火した時には、出火階およびその直上階に、1階で出火した時には出火会、その直上階および地階に、地階で出火した時には出火階、その直上階およびその他の地階に優先的に警報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8. 他の放送設備と共用するものにおいては、火災時非常警報以外の放送を遮断できる構造とすること。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他の電気回路により誘導障害が発生しないようにすること。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0. 一つの消防対象物に2以上の操作部が設置されている時には、それぞれの操作部がある場所相互間に同時通話が可能な設備を設置して、どの操作部でも当該消防対象物の全区域に放送が出来るようにすること。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 초 이하로 할 것

11. 起動装置による火災情報を受信した後、必要な音量で火災発生状況および避難に有効な放送が自動で開始される時までの所用時間は10秒以下です。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2. 音響装置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る構造および性能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ア 定格電圧の80%電圧で音響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のをすること。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イ 自動火災報知設備の作動と連動して作動できるものとする。

제 5 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5 条(配線) 非常放送設備の配線は、電気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で定めたもののほか、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 火災によって一つの階のスピーカーまたは配線が短絡または断線しても、他の階の火災通知に支障が無いようにすること。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電源回路での配線は、屋内消火栓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102)星印 1 による耐火配線に従って、その他の配線は、屋内消火栓設備の火災安全基準(NFSC 102)星印 1 による耐火配線または耐熱配線により設置すること。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電源回路での電路と大地の間および配線相互間の絶縁抵抗は、電気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が定めに従って、付属回路での電路と大地の間および配線相互間の絶縁抵抗は、1 警戒区域ごとに直流 250V の絶縁抵抗測定計を使って測定した絶縁抵抗が 0.1MΩ 以上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폴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非常放送設備の配線は、他の電線と別途の管、ダクト(絶縁効力があることで区画した時にはその区画なった部分は別個のダクトで見る)、モールドまたはプルボックスなど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60V 未満の弱電流回路に使う電線としてそれぞれの電圧が同じである時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 6 조(전원) ①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6 条(電源) ① 非常放送設備の常用電源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1. 電源は、電氣が正常に供給される蓄電池または交流電圧の屋内幹線として、電源までの配線は専用ですること。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開閉器には、“非常放送設備用”と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

②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非常放送設備には、その設備に対する監視状態を60分間持続した後、有効に10分以上警報できる蓄電池設備(受信機に内蔵する場合を含む。)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7 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 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 는 범위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7 条(設置・維持基準の特例)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既存建築物が増築、改築、大修繕されたり、用途変更される場合において、この基準が定める基準により当該建築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非常放送設備の配管、配線などの工事が顕著に困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当該設備の機能および使用に支障がない範囲内で非常放送設備の設置・維持基準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もある。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